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91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서미화·용혜인·박정현

박지원·윤건영·김 윤

서영석·이재강·이수진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기표소에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장애 이외에도 정신적 장애를 가졌거나 노령으로 인하여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 또는 투표 보조를 받을 가족 등이 없는 선거인은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은 선거인의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이외에도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는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투표보조 대상도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제157조제6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⑪ 투표관리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이하 “공적보조원”이라 한다)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⑫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투표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투표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등”으로, “제10항 및 제11항을”을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로 한다.

④ 사전투표관리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7조제6항 중 “視覺 또는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을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으로,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⑩ (생 략) <u><신 설></u>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투표관리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보조할 사람(이하 “공적보조원”이라 한다)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u>
<u><신 설></u>	<u>⑫ 투표관리관은 공적보조원에 대하여 투표보조의 절차 및 준수사항 등 해당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투표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u>
<u>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u>	<u>⑬ -----</u> ----- ----- ----- -----

등의 조치, <u>그 밖에 필요한 사항</u>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u>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사전투표관리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u>
④ <u>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u>	⑤ ----- -----<u>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공적보조원의 지정 및 교육 등</u>----- ----<u>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u>-----.
⑤·⑥ (생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생략) ⑥ <u>選舉人は 投票所の 秩序를</u>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 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 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 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u>視 覺 또는 身體의 障礙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舉人 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 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 조하게 할 수 있다.</u> ⑦ · ⑧ (생 략)	----- ----- ----- ----- -----신 <u>체적 ·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 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u> -----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 <u>여 필요한 경우 투표관리관에 게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u> ⑦ · ⑧ (현행과 같음)
--	--